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7. 19 선고 2022가단536639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션

담당변호사 이주형

변 론 종 결 2023. 6. 14.

판 결 선 고 2023. 7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C의 어머니이고, 원고는 C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주이다.

나. 원고는 2018. 7. 2. C에게 60,000,000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(갑 제1, 4호증, 이하 '이 사건 지불각서'라고 한다)를 작성, 교부받았는데, 그 각서에는 C이 위 차용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이고,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, 연대보증인 부분의 피고 이름은 C이 작성한 것이고, 그 옆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의 것이 아니라 C의 인영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60,000,000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나,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C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백규